#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8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황명선·최민희·이해식

송재봉·김준혁·김동아

염태영 · 황정아 · 용혜인

송옥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상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 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

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 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 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

참고로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(세무법인 포함)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

또한,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,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2항및 제27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7조의2"를 "제27조의3" 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후단 중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여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
- 2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
- 3. 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3명 이상의 세무사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,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7조의2(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) ①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감사 또는 외부기관의 감사 등으로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

조치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검증기관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.

- 1.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: 3년
- 2.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: 2년
- 3.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: 1년
-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게재하고, 해당 검증기관을 관리·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의10(보조사업자 등의 정	제26조의10(보조사업자 등의 정		
보공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	보공시) ①		
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			
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			
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			
(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			
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			
제외한다)는 보조금통합관리망			
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			
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호는 <u>제</u>	<u>제</u>		
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	27조의3		
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			
는 경우에만 해당된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
제27조(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	제27조(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		
사업의 실적 보고) ① (생 략)	사업의 실적 보고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	2		
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			
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			
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			
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			

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(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)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)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·④ (생 략) <신 설>

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기르 기조리기스크 기기되시
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여
·

- 1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

  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 및 제

   9조에 따른 감사인
- 2. 「세무사법」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
- 3. 「세무사법」제6조에 따라 등 록한 3명 이상의 세무사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2(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) ①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감사 또는 외부기관 의 감사 등으로 제27조제2항

후단에 따른 검증기관의 정산 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 락이 있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 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그 사실 을 즉시 해당 검증기관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 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 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.

-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
  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:
   3년
- 2.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

   이 발생한 경우: 2년
- 3.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: 1년
-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

<u>제27조의2</u>(특정사업자에 대한 회 계감사) (생 략)

제42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따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게 재하고, 해당 검증기관을 관리·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3(특정사업자에 대한 회 계감사) (현행 제27조의2와 같 음)

제42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2	 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 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